

DDA 농업협상 세미나 자료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

2004년 8월 9일

세 미 나 일 정

- 개회 및 인사말(14:00 ~ 14:10)

- 제1주제 발표(14:10 ~ 14:35)
 - 주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주요내용 및 평가
 - 발표: 임영록(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 제2주제 발표(14:35 ~ 15:00)
 - 주제: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기본골격의 주요내용과 향후 대응
 - 발표: 윤장배(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15:00 ~ 15:10 중간 휴식

- 제3주제 발표(15:10 ~ 15:35)
 - 주제: 국내보조와 수출경쟁에 대한 기본골격의 전이해
 - 발표: 임송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DDA 협상 대책연구단)

- 제4주제 발표(15:35 ~ 16:00)
 - 주제: 시장접근분야의 기본골격의 이해와 평가, 시사점
 - 발표: 서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DDA 협상 대책연구단)

- 중간 휴식(16:00 ~ 16:10)

- 종합 토론(16:10 ~ 17:10)

- 방청석 질의 및 응답(17:10 ~ 17:55)

- 폐회(17:55 ~ 18:00)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주요내용 및 평가

목 차

1. 주요 협상 경과
2. 주요 내용
3. 평가

임 영 록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1. 주요 협상 경과

- 작년 9월 칸쿤 WTO각료회의 결렬이후 협상 기본골격 (framework)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 전개
 - 03.10월 APEC 각료회의, 04.1월 Davos 각료회의, 04.5월 OECD 각료회의, 05.7월 개도국 각료회의 등
 - 미국 Zoellick 무역대표, EU Lamy 집행위원 등은 각국 통상장관에게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서한 발송
 - WTO에서는 04.2월 각 협상그룹 신임의장단 선출이후 본격 협상 재개

- 미국대선, EU집행위원 교체 등 주요국 정치일정상 7월 말까지 협상 기본골격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형성

- 7.16 오시마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DDA 협상 기본골격 초안 발표
 - 7.27(화)~31(토)간 WTO에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등 쟁점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상
 - 7.30 오시마 의장은 초안 수정안 배포

- 8.1(일) 00:30경(우리시간 07:30경)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문 채택

2. 주요 내용

가. 협상시한

- DDA 협상을 당초 시한인 2005.1.1을 넘겨 6차 각료회의
까지 진행
 - 6차 각료회의는 05.12월 홍콩에서 개최

나. 농 업

시장접근

-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
 -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기준(Single Approach) 적용
 - 관세구간의 수·범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추후 협상

- 관세상한의 역할(role of tariff cap)은 추후 평가

- 관세항목중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 지정 허용
 - 민감품목은 품목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
 - 모든 민감품목에 대해 MFN 원칙에 따른 TRQ를 확대하되,
구체적 증량규칙은 추후 협상

-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의 수 및 취급, TRQ 증량, 이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 선진국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민감품목보다 관세감축 및 TRQ증량에 있어 더욱 신축성을 허용하는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지정 허용

국내 보조

- 무역왜곡 보조 총액을 구간별 공식(tiered formula)에 따라 높은 수준일수록 많이 감축하되 보조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많이 감축
 -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감축하되, 이행첫해에 기준년도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20% 이상을 감축(down payment)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e-minimis)+블루박스
- 감축대상보조(AMS)도 구간별 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를 가진 국가는 더 많이 감축하되,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축
-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감축하는 협상을 진행하되, 개도국 우대 원칙을 고려
 - 단, 대부분의 최소허용보조를 빈농·생계농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감축의무 면제
- 생산제한 조건하의 직접지불인 Blue Box의 기준을 변경, 생산제한 조건을 삭제한 새로운 Blue Box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되, 농업 총생산액의 5% 상한 설정

- 변경된 기준 및 추가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할 것을 규정
- 허용보조(Green Box)는 무역왜곡 효과 또는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명확화
 - 단, 허용보조의 기본개념 및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비교역적 관심(NTC) 고려
- 긴 이행기간, 낮은 감축률, 개도국우대 국내보조 유지를 통해 개도국 우대

수출경쟁

- 추후 협상에서 합의될 시점까지 아래사항 철폐
 - 수출보조
 - 180일 이상의 장기 상환기간의 수출신용
 - 180일 이내의 단기 수출신용중 최소이자율,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위배되는 수출신용
 -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 상업적 거래를 저해하는 추후 합의될 기준에 배치되는 식량 원조

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 관세율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선형 인하방식 (non-linear formula)을 관세 감축공식으로 채택하여 높은 관세일수록 더욱 많이 감축

- 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하며, 미양허품목의 경우 2001년 실행세율의 2배부터 감축
- 양허비율이 낮은(35% 미만) 국가는 공식적용을 면제하는 대신 양허비율 확대
- 분야별 무세화 및 관세조화를 추진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함을 규정
 - 대상 품목, 참여 범위, 개도국 신축성 등은 계속 협의
- 개도국에게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범위의 품목에 대한 저율감축을 적용 또는 예외 인정
- 최빈개도국은 공식적용 및 분야별 무세화 참여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양허비율 확대
- 각국은 각국 수출업자가 해외에서 당면한 비관세장벽에 관해 2004.10.31까지 통보하고, 통보된 비관세장벽을 확인, 조사, 분류하여 추후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
 - *단, 관세감축 공식, 미양허품목에 대한 기준세율,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분야별 자유화 참여, 특혜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 협상 필요

라. 서비스

- 개선 양허안을 2005.5월까지 제출
 - 1차 양허안 미제출국은 조속히 제출

마. 싱가포르 이슈

-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 개시
 - 상품이동 촉진을 위해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포 및 관리)의 명확화 및 개선을 목표
 - 7월 이후 첫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무역원활화 협상그룹을 설치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은 DDA 협상의제에서 제외

바. 개발

- 개도국 우대 관련 제안 및 이행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반이사회에 대한 작업결과의 보고시한을 2005년 7월 및 5월로 각각 설정
 - *초안에서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약속은 각국의 산업분야별 발전수준을 고려한다는 개도국 세분화 암시 문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

3. 평 가

- 기본골격 타결로 작년 9월 칸쿤각료회의 실패이후 소강상태였던 DDA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칸쿤회의 결렬에 이어 이번 합의채택이 다시 실패했을 경우 WTO의 위상실추가 방지되고,
 - FTA 등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추세 속에서 세계다자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모멘텀 유지

*대외무역이 국내총생산의 70%이상을 점유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매우 중요

- DDA의 세계경제에 대한 이익(2003.2. OECD): 전세계 소득 증가는 부분 개방시 2100억불, 완전 개방시 6700억불 기대
- 한국경제에 대한 이익 (2002.12, KIEP) : 국내총생산은 약 2.18-9.08%, 후생수준은 약 1.8-9.1% 증가 예상

□ 농업분야에서 민감품목을 각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민감품목보다 더 큰 신축성을 부여하는 개도국 특별품목(SP)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관세상한 가능성, 민감품목에 대한 TRQ증량 등이 포함된 것은 다소 부담이나, 상세 내용은 추후 협상에서 결정기로 함에 따라 우리 농업에 대한 구체적 영향은 추후 협상 결과에 달려 있음

□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높은 관세를 더 감축하도록 하는 비선형 인하공식이 채택된 것은 해외 관세장벽을 크게 낮춤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전망

□ 아울러 수출입 통관 절차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무역원활화 협상출범 결정으로 세계무역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 것도 긍정적인 결과

□ 다만, 이번에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주요쟁점들이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금년 9월이후 전개될 세부원칙(modalities) 협상으로 넘겨짐으로써 향후 매우 어려운 협상이 전개될 전망.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기본골격의 주요내용과 향후 대응

목 차

1. 농업협상 진행경과
2. 시장접근
3. 국내보조
4. 수출경쟁
5. 평가 및 향후 대응

<참고 1>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요지

<참고 2> 기존 초안과 기본골격 비교

<참고 3> 기본골격 합의사항 및 향후 협상과제

운 장 배
농림부 국제농업국

1. DDA 농업협상 진행경과

-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
 -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
 - ② 이행계획서 제출('03. 9, Cancun 각료회의까지),
 - ③ 협상완료('04말)
- 2003.3월 농업협상 그룹 의장(Harbinson)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Modality)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
- 20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하는 안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
- WTO는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framework**)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
 - 이 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의장은 7월 중순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골격 초안(오시마 안)을 제시(7.16)
 - 동 초안을 기초로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의 마무리 논의를 거쳐 7.31일 일반이사회에서 확정됨
 - ※ 당초의 협상시한인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기로 함

2. 시장접근

- 관세감축 공식
 - 관세 수준에 따라 대상품목을 여러 구간으로 분류하여 감축 하되,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

- 선진국·개도국 모두에게 구간별 공식 적용
 -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각 구간에 적용되는 관세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상과제로 제시되었으며,
 -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반대의사를 표시해 온 관세상한 문제는 추후 평가과제로 명기
- ※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는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서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관세상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과제

<우리나라 주요 고관세 품목 현황>

구 분	실품목(누계)	HS 10단위(누계)	비 고
300% 이상	25개	94개 (6.5%)	마늘(360%), 참깨(630%), 쌀보리(300%), 겉보리(324%)
250% 이상	31개	108개 (7.4%)	고추(270%)
200% 이상	39개	124개 (8.5%)	수삼(223%), 밤(219%)
100% 이상	47개	142개 (9.8%)	분유(176%), 감귤(144%)

□ 민감품목

- 자기선정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appropriate number)의 민감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세감축과 TRQ 약속을 연계하여 의무부과
-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편차(deviations)를 고려하여 추후 협의될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결정

<우리나라의 TRQ 품목>

구분	품목수	품목명
TRQ 품목	63개 품목 (HS 10단위 190개)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인삼, 밤, 대두, 분유, 고구마, 감자, 낙화생, 녹두·팥, 대추 등

*쌀은 관세화유예품목으로 쿼터밖 관세(out-of-quota tariff rate)가 없음
 *쌀 제외시 우리나라 이중관세 품목은 62개임(HS 10단위 174개)

□ 개도국우대

-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낮은 감축율을 적용하고 개도국이 지정하는 적절한 수(appropriate number)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

* 특별품목 적용을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별품목관련 지정요건은 추후 협상에서 보다 구체화

3. 국내보조

□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을 무역왜곡 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을 감축
 - 동 보조 총액 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을 도입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
 -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감축보조(AMS)

- AMS 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개념 도입
-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감축토록 함으로써 품목간 전용을 제한
 - ※우리나라의 경우, AMS 양허액 대비 평균 90%이상이 쌀 관련 보조임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최소허용보조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 우리나라는 '01년 기준으로 소(송아지생산안정제), 마늘(마늘수매 지원) 등 20여개 품목에 de-minimis 보조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품목 보조액이 생산액의 1% 내외(품목별특정보조 : '01년 총생산액 대비 1.22%)

□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 농정개혁 수단으로서 Blue Box의 역할 인정
- 기존의 **Blue Box**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생산제한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Blue Box**를 추가
 - 다만,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과거 일정기간 동안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사용실적이 없던 국가도 도입이 가능

□ 허용보조(Green Box)

- 허용보조요건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on Trade Concerns)의 절적인 고려 명시

4. 수출경쟁

□ 일정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 지금까지 개도국에만 허용되던 수출보조(농업협정 제9.4조)는 유지하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인 기간까지” 인정한다는 단서 추가

※ 우리나라는 현재 과실, 화훼, 김치, 인삼 등에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01년 260억원)

5. 평가 및 향후 대응

- 이번합의로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마련됨으로써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
 - 그러나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어 현단계에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동안 협상과정에서의 우리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면을 동시에 포함
 -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임
 - 국내보조분야에 대해서는 종래의 감축대상보조(AMS) 외에 최소허용보조(De minimis)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요인이나 감축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인정됨
 - 신규로 블루박스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

*대상품목은 후속협상의 내용을 감안하면서 추후 검토 대응

-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이며, 특히
 -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던 관세상한 설정 저지
 -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TRQ 증량 최소화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SP)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
 - De minimis의 감축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 예정

- 농업인,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 기본골격 타결안 및 향후 대응계획 홍보 추진

- DDA 농업협상 관련 세미나 개최, 농민단체 설명회, 시·도 순회 지방설명회 개최 추진
 - 이미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향후 협상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지속
-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Framework)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해 품목·정책별 정밀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참고 1>

1.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요지

가. 시장접근

□ 관세구간 설정 및 관세감축의 원칙

-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하는 구간방식 (Tiered formula)을 채택
 - 감축기준세율 : 양허관세
-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deeper cuts in higher tariffs)하되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인정
 -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추후 협상
- 관세상한 설정 문제는 추후 평가과제로 남김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에 신축성 부여

- 적절한 수(an appropriate number)의 대상품목을 각국이 선정하여 제시
- 민감품목은 실품목(each product)별로 TRQ 약속과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
-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일탈정도(deviations)를 고려하여 추후 협의될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결정

□ In-quota관세 감축 및 TRQ 개선

- 현행 TRQ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In-quota관세는 감축 또는 철폐
- 경사관세,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SSG는 추후협상

□ 개도국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관세감축방식, 낮은 관세감축률 적용, 민감품목의 수 및 취급, TRQ증량, 이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명문화

- 개도국에 있어 특별품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
 -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하여 제시
 -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
-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제도(SSM) 설정

나. 국내보조

□ 기본원칙

- 보조수준에 따라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하되(Tiered Formula)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
- 감축대상보조(AMS) 감축과 함께 AMS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의 총액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
- 개도국 우대에 대하여는 긴 이행기간,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개도국 우대 국내보조(농업협정 제6.2조)는 유지 등

□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 구간공식(tiered formula)에 따라 AMS, de-minimis, 블루박스의 총액을 감축하되,
-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감축보조(AMS)

-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를 가진 국가는 더 많이 감축
 - 품목별 상한 설정 및 일부 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축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최소허용보조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 다만, 거의 대부분의 de-minimis를 자원부족농·생계농을 위한 지지에 제공하는 개도국은 감축면제

□ 블루박스 보조

- 농정개혁의 수단으로서 블루박스의 역할 인정
- 블루박스 보조의 도입 조건을 규정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직접지불>
 -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 또는
 - 고정된(fixed and unchanging)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 또는
 -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
 - <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
 -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 또는
 -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 그리고
 - 고정된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 이하에 대한 지불일 것
- 블루박스 보조의 지급한도는 과거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로 규정
- 블루박스 보조 지급실적이 있는 국가뿐 아니라 잠재적인 사용국에도 상한까지는 사용가능함을 명시

□ 허용보조

-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도록 요건을 재검토 및 명확화하고 NTC의 적절한 반영
- 이행 점검 및 감독 체제 보완

다. 수출경쟁

□ 기본원칙

- 합의된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 지원 정책의 규율 강화

□ 철폐대상 수출보조

- 양허된 수출보조와 180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수출신용, 최소이자율,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어긋나는 수출신용 *180일 이내의 수출신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을 추후 합의
- 정부의 재정지원과 손실보전 등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 개도국우대

- 긴 이행기간 부여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농업협정 제9.4조)
 -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 철폐이후 협상되는 적정한 기간동안 존치
-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의 국영무역기관(STE)의 독점적 지위유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

□ 예외적인 상황 고려

- 일정한 요건과 협의절차에 따라 회원국간 일시적인 금융지원 약정 가능

라. 기타

□ 신규 가입국

- 신규 가입국의 특별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 추가

□ 감시와 감독

- 농업협정 제18조는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 필요

□ 미결쟁점

- 분야별 자유화(Sectorial initiatives), 수출세, 지리적표시 등
- 수출금지 및 제한(농업협정 12.1조) 규율 강화 조항 추가

<참고 2>

2. 기존초안과 기본골격 비교

가. 시장접근

구분	Harbinson 초안	Derbez 초안	기본골격
관세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감축률 접근방식 -선진국 3단계, 개도국 4단계 -평균 40~60%, 최소 25~45% 감축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그룹으로 나눈 혼합방식 -구간별 UR방식, 스위스공식, 무세화(개도국 0~5%) 적용 ○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 R/O 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적 시장접근 확대 보장 단 일부 NIC품목은 관세상한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개도국 단일 접근방식 -관세구간별 차등감축방식 (tiered formula) *구간수, 구간별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의 ○ 관세상한은 추후 평가 필요
민감품목 신축성부여	<p><선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개도국 : SP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0%, 최소 5%감축, TRQ증량면제 -대상품목은 스스로 선택 ○ 이행기간 2배 	<p><선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개도국 : SP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 선형감축, TRQ 증량면제 단, 이미 관세가 상당히 낮으면 감축 면제 	<p><선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의 자율선정권 인정 - 적절한 수(appropriate number)에 대해 인정 ○ TRQ 증량과 관세감축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 - 품목별 TRQ 증량 - 최저감축률 적용 <p><개도국 : SP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 ○ 적절한 수에 대해 인정 ○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에서 보다 구체화
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를 '99~'01년 평균소비량의 10%까지 확대 - 품목간 신축성 부여 ○ 개도국은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quota세율 []%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TRQ 관리 개선 ○ In-quota 세율 감축 또는 철폐
SSG/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G : DDA 이행 종료 후 철폐 ○ SSM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G : 미합의 ○ SSM : 반영 -대상품목, 적용조건은 추후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G : 추후 협의 ○ SSM : 반영 ○ 종가세의 종량세 전환 등 관세체계의 단순화는 추후 협상

나. 국내보조

구분	Harbinson 초안	Derbez 초안	기본골격
총액보조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총액 감축 - 2000년 총액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총액 감축 - 구간별 감축(tiered formula) - 이행초년도 20% 감축 ※ AMS+de-minimis+블루박스
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5년간 60% 감축 - 품목별 AMS는 '99~01년 평균지급액 초과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총액감축 ○ 품목특정 AMS수준에 상한 도입 - []년 동안의 평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감축(tiered formula)공식에 따라 높은수준 보조 더 많이 감축 ○ 품목특정 AMS 상한 도입 및 일부 품목 상한 감축
Blue Box	<p><선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50%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 <p><개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33% 감축하거나 이행5차년도에 AMS에 포함시켜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한” 전제 없는 변형된 형태의 Blue box 도입 ○ '00~'02 농업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상한설정 후 추가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업협정의 블루박스 요건을 강화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 도입 ○ 과거 일정기간 농업생산액의 5% 상한설정
de minim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5년간 매년 0.5%씩 감축 ○ 개도국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 감축 ○ 개도국 : 감축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 감축 - 개도국우대 고려 ○ 자원부족농·생계농에 대한 de-minimis의 중요성 고려
Green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틀 유지하되,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가 되도록 기준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에 미치는 무역왜곡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가 되도록 기준 재검토 및 명확화 -NTC 충분히 고려

다. 수출경쟁

구분	Harbinson 초안	Derbez 초안	기본골격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과 물량 기준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출보조액의 50% 품목 · 선진국 : 5년간 감축 · 개도국 : 10년간 감축 - 여타 품목 감축 · 선진국 9년 개도국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 []년에 걸쳐 철폐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지원정책 규율 강화 ○ 양허된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고 위배되는 경우 감축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 []년에 걸쳐 철폐 *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판단근거 : 상환기간([]개월) ○ 기타 품목 : 철폐를 전제로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적요소 철폐 - 상환기간 180일 이상 또는 최소이자율,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신용 철폐
식량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공여, 상업적 거래와 연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거래를 저해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철폐 - 잉여농산물 처분이나 상업적 판매 금지 등 ○ 국제기구의 역할 무상원조 문제는 추후 협상
수출국영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차별행위, 정부의 재정적 특권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영무역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보조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적 관행 철폐 -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등
수출제한 및 수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외 신규도입금지 ○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내 운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업협정 12.1조 강화방안 추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업협정 12.1조 강화방안 추가 논의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이행기간 적용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 유지 ○ 개도국 수출국영무역에 대해 의무 면제

<참고 3>

3. 기부골격 합의사항 및 향후 협상과제

	쟁점	합의사항	협상과제
시장접근	1. 관세감축	○ 구간방식(tiered approach) - 양허관세 기준 감축	· 관세구간 경계설정 및 구간수 · 구간별 감축방식 · 이행기간
		○ 관세상한	· 역할 추후 검토 - 구간방식, 조화감축과 비교
	2. 민감품목	○ 신축성 부여 - 선정 : 자기선정 원칙, 적절한 수 (appropriate number) - 취급 : 실품목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를 통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 세부 선정기준 · 민감품목 수 · TRQ 확대 범위, 관세감축 수준
	3. 특별품목	○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 지정 가능	· 선정기준 및 대우
	4. 기타		· TRQ의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 In-quota 관세 감축폭 및 철폐 여부 · SSG
국내보조	5. 무역왜곡보조 총액	○ 구간방식(tiered approach) - ASM, de-minimis, 블루박스 총액 - 이행첫해 20% 감축	· 구간경계 설정 및 구간별 감축폭 · 이행기간
	6. AMS	○ 구간방식(tiered approach) - 품목별 상한설정 - 일부품목은 상한 감축	· 구간경계 설정 및 구간별 감축폭 · 상한설정 기준년도 · 감축상한 대상 품목 및 감축폭
	7. de-minimis	○ []% 감축 - 개도국우대 원칙 고려 - 빈농·생계농에 지급하는 개도국은 감축의무 면제	· 선·개도국 감축폭
	8. 블루박스	○ 농정개혁수단으로서의 역할 인정 ○ 기존의 블루박스에 더해 새로운 유형 도입 ○ 상한설정 : 농업총생산액의 5%	· 요건 재검토 및 강화 · 농업총생산액 기준년도
	9. 허용보조	○ NTC의 적절한 반영 ○ 이행점검 및 감독 기능 강화	· 요건 재검토 · 구체적인 감독기능 강화 방안
수출경쟁	10. 수출보조	○ 합의된 시점까지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	· 수출보조 철폐 시한 ·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의 수출보조 요소 구분 방안 마련 · 수출제한 및 금지 관련 규정 (농업협정 12.1조) 강화

국내보조와 수출경쟁에 대한 기본골격의 전이해

목 차

1. 머리말
2. 협상 경과와 타결 요인
3. 기본골격의 의미
4. 국내보조에 대한 전이해
5. 수추경쟁에 관한 전이해
6. 세부원칙 협상 일정과 과제

임 송 수

쌀·DDA농업협상 특별대책 연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머리말

- 2004년 8월 1일에 타결된 기본골격(framework)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함(WTO 2004).
 - 2003년 9월에 열렸던 제5차 WTO 칸쿤(Cancun) 각료회의의 결렬로 높아졌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 구도, WTO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불신, 협상일정 지연 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골격은 수출보조의 철폐, 높은 관세와 보조를 더 많이 깎는 방식에 의한 시장접근 개선과 국내보조 감축 등을 담고 있으며, 아프리카 회원국의 관심사항인 면화(cotton) 문제를 다루고 있음.¹⁾
- 농업에 관한 7쪽의 내용은 Doha 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나, 개혁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이번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목표로 세부원칙(modalities) 협상이 이뤄질 것임.

2. 협상 경과와 타결 요인

가. 협상 경과

- 8월 1일에 기본골격이 정식 채택되기까지 7월 말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됐던 주요 협상 경과를 요일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1) 서부 아프리카 4개국(Benin, Burkina Faso, Chad, Mali)은 미국의 면화보조로 인해 자국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함.

표 1. 기본골격 협상에 관한 주요 경과

날짜(7월)	회 의	주요 내용
8월 1일	GC 회의	기본골격을 정식 채택함.
7월 31일	Green Room 회의	밤샘 논의를 통해 오전에 합의에 이뤘고, 합의문안 점검 회의를 거침.
	HOD 회의	합의문을 배포하고 토론함.
7월 30일	오전 7시에 수정안 배포	면화에 관한 각료회의로 계획됐던 28일보다 지연됨.
	HOD 회의	회원국들은 수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됐으며, 협상이 칸쿤 때와 다르다는 점 등이 지적됨.
	Green Room 회의	20개국이 수정안에 대한 집중 논의하기 시작함.
7월 29일	FIPs 합의 도출	28~29일 밤샘 논의를 거쳐 FIPs 각료들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를 케언즈 그룹과 G20에 설명함.
	HOD 회의	Groser 의장은 수출신용, 민감 및 특별 품목 등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얻었다고 밝힘.
7월 28일	HOD 회의	Groser 의장은 29일에 GC 의장에게 수정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G10은 FIPs 중심의 폐쇄적 협상에 문제를 제기함.
7월 27일	GC 회의	Oshima GC 의장은 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리비아의 가입절차 승인 등의 의제를 다룸.
7월 23일	HOD 회의	WTO는 28일에 수정안 제시될 예정이며, 채택 기한은 30일이라고 밝힘.
7월 19 ~20일	HOD 회의	초안에 관한 논의에서 수입국은 관세 상한, TRQ 증량 등의 어려움과 개도국은 선진국을 위한 보호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함.
7월 16일	WTO	WTO는 기본골격 초안을 배포함.

자료: WTO(www.wto.org)

나. 타결 요인

- 5개 주요국(FIPs)이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제네바 시간으로 7월 28일(수)에 이룸으로써 협상 진전에 이바지함.²⁾
 - 미국의 Zoellick과 EU의 Lamy 대표는 브라질 Amorim 외교부 장관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중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함(ICTSD 2004).³⁾
 - FIPs는 ‘합의(agreement)’란 표현을 사용하기 꺼려했는데, 이는 협상 투명성과 관련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임.

2) FIPs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됐고 Non-Group 5(NG5)로도 불림. 브라질은 G20의 대표이고, 인도는 G20과 G33에 속해 있으면서 개도국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호주는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의 수장임. 특히 FIPs 각료회의에서 인도의 Nath 산업부 장관은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압력을 가했고, 미국의 Zoellick 대표가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 품목(SP)과 de minimis에 대한 S&D 등이 성사됐음(The Financial Express 2004a, 2004b).

3) Amorim 장관은 개도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 농업협상 Groser 의장의 기본골격 수정안이 예정됐던 7월 27일(화)보다 늦은 7월 30일(금) 오전에 제시된 것도 FIPs의 합의 결과를 수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 G10을 대표해 Diess 스위스 대통령은 7월 27일(화)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FIPs 중심의 논의가 회원국의 참여 및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며, 개도국 그룹인 G33도 이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7월 31일(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린 마지막 일반 이사회(GC)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기본골격 타결에 FIPs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언함.
- G90을 구성하는 아프리카 그룹은 7월 27일(화) 일반 이사회(GC) 첫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면화(cotton) 문제도 농업협상의 틀 안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협상에 탄력을 더함.
- 이때까지 아프리카 그룹은 면화 문제를 농업협상과 별도의 독립된 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을 주장해 왔음.
 - 아프리카 그룹은 협상 의제로써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를 반대했던 것이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이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칸쿤 초안보다 개도국에 더 유리한 내용이 담긴 이번 초안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시작했음.4)
- Groser 의장은 그룹별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을 촉진함으로써 회원국 사이의 이견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꾀했고, 자세한 규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시장접근 분야는 원칙 및 추후 협상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 또는 미국과 EU 사이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합의'보다 '거부'하기 어려운 문안을 제시함.
- 그룹별 대표(coordinators)를 매개로 그룹 내 활동과 소규모 그룹 회의(green room)를 통한 집중적인 토론은 최종 합의안 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4) 예를 들면, 모든 수출보조의 철폐,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만 상정 등임.

- 협상 막바지(약 2주간)에 집약적으로 이뤄진 소규모 그룹회의는 10개국 또는 20개국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7월 30일(금) 오후 5시부터 열린 20개국 회의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협상 타결에 이바지함.5)
- 회원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된 주요 쟁점 사항은 세부원칙 협상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에 기본골격 타결이 용이했음.
 - 예를 들면, 관세감축 공식, 관세 상한 설정, 민감 품목 및 특별 품목의 기준과 취급에 관한 자세한 규정 등은 구체성 수준(level of specificity)을 낮추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수출보조 철폐 시한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이 있음.
 - 기본골격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정 회원국을 배려해 이를 감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타결 가능성을 높임.
- 개도국의 요구사항이 비례(propportionality) 원칙아래 기본골격에 균형 잡히게 반영됨.6)
 - 특히 G20이 요구한 수출보조의 철폐, 혼합(blended) 대신에 구간(tiered) 방식의 관세감축 공식 채택, de minimis 감축의 신축성 등이 반영됨.7)
 - 기본골격 초안은 선진국의 민감 품목 기준과 취급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이 사용할 특별 품목에 대한 기술은 간단하고 모호하게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구체성 수준을 맞추어 이 문제를 해결함.

5) 우리나라는 시장접근 분야의 22개국 소규모 그룹회의에 참여했으나, 7월 30일 마지막 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음. 이 회의에는 G10을 대표한 스위스와 일본이 참여함. 노르웨이는 블루박스에 관한 논의 시간(30분 정도)에만 참여했음.

6) 비례 원칙은 선진국과 견주어 개도국의 관세감축 의무가 낮은 것을 뜻함.

7) UR 공식, 스위스 공식, 무관세 등으로 구성된 혼합 공식은 고관세 품목이 적으면서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구조를 가진 선진국에 유리한 반면에 단순한 관세구조아래 평균 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함(Lim 2004).

- 미국과 EU가 국내보조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에야 비로소 시장접근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함.
 - 2004년 6월에 미국의 면화 보조에 대한 WTO 분쟁해결 판정에서 브라질이 승소한 사실과 설탕에 대한 EU의 수출보조가 WTO 규율에 어긋났다고 브라질, 호주, 태국 등이 소송한 사건 등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EU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개혁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됐음.⁸⁾
 - 특히 미국의 초기 입장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국내보조 분야의 양허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신축적으로 협상에 임함.
 - 미국은 고위 관료들을 동원해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7월 협상의제(July Package)에 적극 참여했는데, 11월 대통령 선거와 연말로 끝나는 신속 협상권(Fast Track)의 연장을 위해서는 기본골격 타결 시점이 중요했기 때문임.⁹⁾
- 협상 타결을 위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여개 회원국에서 각료가 HOD(Head of Delegation)나 GC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활발한 협상 활동을 벌임.¹⁰⁾

다. 주요국별 이해득실

- 회원국들은 기본골격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음.
- 주요국이 거둔 성과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8) 미국의 Zoellick 대표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했으나, EU의 Lamy 대표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사실 2004년 8월 4일에 WTO 패널은 설탕에 대한 EU의 수출보조가 WTO 규율에 어긋났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밝힘(Washington Trade Daily 2004).

9) 신속 협상권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일정기간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무역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임.

10) HOD 회의의 수석대표는 제네바 주재 대사가 말고 GC 회의는 본부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임. Groser 의장은 많은 회원국에서 각료들이 참석하더라도 WTO 사무국 차원에서 공식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표 2. 회원국 또는 그룹별 성과

회원국 또는 그룹	주요 성과
G20 (브라질, 인도, 중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품목(SP)과 수입보호 장치(SSM) · S&D: 시장접근 및 de minimis ·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촉진 부문 1개만 채택 · 무역왜곡 보조 downpayment 20% · 신규 가입국에 대한 특별한 신축성 조항
G90 (아프리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화문제 접근 ·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촉진 부문 1개만 채택
G10 (우리나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상한 추후 평가 · 수출금지 및 제한 규제 · 민감 품목 및 일부 SP 확보
케언즈 그룹 (호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품목의 TRQ 증대 ·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블루박스 · 수출보조 철폐 · 구간별 관세감축 공식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 품목 확보 · 수출신용과 식량원조 및 STE 규율 설정

3. 기본골격의 의미

- 기본골격은 더욱 자세한 협상 곧 세부원칙(modalities)을 설정하기 위한 정치적인 합의임.
 - WTO 문서(WT/GC/W/535 Annex A)는 농업 세부원칙 설정을 위한 기본골격이란 제목이 붙임.¹¹⁾
- 기본골격은 i) 추구해야 할 것(예: 수출보조의 철폐), ii) 추구하지 않을 것(예: 싱가포르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달의 투명성), iii) 추구하는 방식(예: 구간별 공식에 따른 관세감축) 등을 서술한 것임.
- 기본골격은 법적인 규율이 아닌 정치적인 지침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보증하기 위해 미국은 수정안의 머리글에서 이 문서가 분쟁 해결 절차나 기존 WTO 협정의 해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나, 최종 타결안에서 이 내용은 삭제됨.¹²⁾
 - 7월 31일(토)에 열린 비공식 HOD 회의에서 G10을 대표해 스위스는 합의된 기본골격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발언함.

11) 원문 제목은 다음과 같음.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Agriculture

12) 기본골격 수정안(Job(04)/96/Rev.1)에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원문은 다음과 같음. The Framework text in Annex A shall not be used in any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DSU and shall not be used for interpreting the existing WTO agreements.

4. 국내보조에 대한 전이해

가. 조화(harmonization)의 원칙(para.6)

- ‘무역왜곡 보조의 실질적인 감축(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이란 Doha 각료회의 위임사항을 상기시키면서 기본골격은 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의 원칙을 강조함.
 - 국내보조 부분에서 조화란 용어가 3번이나 나타남.
- 조화의 수단으로서 구간별 공식(tiered formula)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공식은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AMS 감축에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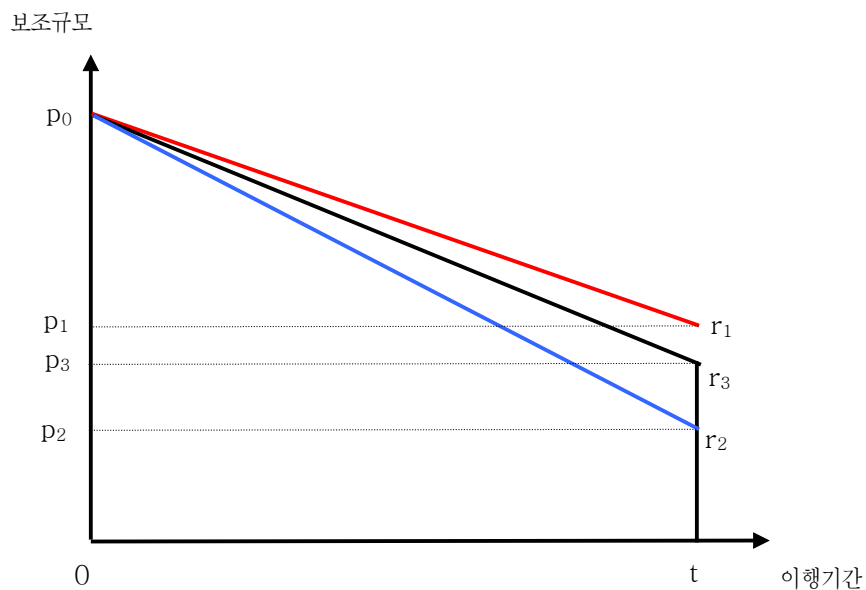
나. 무역왜곡 보조 총액의 감축(para.7~8)

- 무역왜곡 보조는 AMS 양허수준, 허용된 de minimis, 블루박스의 합으로 정의됨.¹³⁾
 - 무역왜곡 보조 총액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보조 사이의 전이(box shifting)를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임.
 - 그러나 보조 형태별 무역이나 생산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현실에서 이들을 같은 이름아래 묶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무역왜곡 보조는 구간별 감축공식에 의해 감축하되 이행 첫 해에 기준 수준에서 80%를 넘지 않도록 함.
 - 이와 같은 downpayment 방식에 의한 보조 감축은 케언즈 그룹(G/AG/NG/W/35)과 ASEAN 그룹(G/AG/NG/W/55)이 각각 2000년 9월과 11월에 제안한 방식이며, 특히 케언즈 그룹은 50%의 downpayment를 요구했음.
 - 농업 협상 위원회 Harbison 전임 의장의 종합 보고서도 downpayment 방식의 보조 감축을 소개했음(임송수 2003a).

13) De minimis는 품목 특정과 불특정 보조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해당 품목과 전체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중복 산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이 문제는 추후 협상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기본골격 협상에서 인도와 브라질이 downpayment 방식의 보조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보조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감축률을 설정하는 공식은 추후 협상을 통해 이뤄질 테지만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의 규모와 보조의 절대규모를 기준으로 보조 높낮이를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임.
- 구간별 공식에 따른 무역왜곡 보조의 감축 의무는 감축 상한이 아닌 최소한의 감축수준으로 해석해야 함<그림 1>.
 - 무역왜곡 보조가 감축 공식에 따라 이행기간(0-t₁)에 p₀-r₁의 스케줄로 감소하는 것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AMS, 블루박스, de minimis에 대한 각각의 상한이나 감축의무를 적용했을 때 그 합계가 p₀-r₃의 스케줄로 나타난다면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는 t₁년에 0-p₃(<0-p₁)으로 구속됨.
 - 무역왜곡 보조가 p₀-r₂의 스케줄로 감소하도록 정해졌을 때 개별 보조의 상한이나 감축의무가 더 높은 보조 규모(0-p₁>0-p₂)로 산출된다 하더라도 회원국의 보조 규모는 0-p₂에 구속됨.

그림 1. 무역왜곡 보조 총액과 구성 보조별 감축의 관계



-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현행 및 양허수준과 기본골격 사이의 무역 왜곡 보조를 견주면 <표 3>과 같음.
 - EU는 기본골격 아래 블루박스와 de minimis의 감축으로 보조 규모가 양허수준 1,115억 달러에서 495억 달러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에는 품목 불특정 de minimis가 블루박스로 전환되면서 전체 보조는 286억 달러에서 238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
 - 블루박스를 최대한 가용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보조 감축은 6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산출됨.
 - 노르웨이는 AMS와 블루박스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 보조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에 인도는 블루박스를 더 많이 활용할 경우 오히려 보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⁴⁾

- 첫째에 20%를 감축하는 downpayment 방식은 i) AMS가 실행수준이 아닌 양허수준을 기초로 감축된다는 점, ii) AMS 소진률(현행/양허)이 낮다는 점, iii) 보조의 형태가 차츰 그린박스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회원국에 제한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표 4>.¹⁵⁾

14)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직접지불의 정책수단을 채택하기에는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음.

15) UR 6년 이행기간에 선진국에 적용됐던 감축률인 20%를 이행 첫째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농정개혁 의지와 의무를 나타낸 상징적인 합의로 해석할 수 있음(Agra Europe 2004a).

표 3. 무역왜곡 보조의 규모 비교

단위: 100만 달러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	일본	우리나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기준연도		2000	1998	1999	2000	1997	2000	2000	2000	1998	2000
현행수준	AMS	119	83	638	47,932	-	6,461	1,457	1,169	2,258	16,803
	블루박스	-	-	-	24,401	-	845	-	871	-	-
	de min	12	409	748	817	1,003	289	453	-	-	7,341
	합계	131	491	1,385	73,150	1,003	7,596	1,910	2,041	2,258	24,143
양허수준	AMS	264	997	3,041	73,741	-	36,231	1,549	1,266	3,180	19,103
	블루박스	-	-	-	24,401	-	845	-	871	-	-
	de min	958	6,400	972	13,360	8,497	4,160	2,843	98	223	9,476
	합계	1,222	7,397	4,013	111,502	8,497	41,236	4,392	2,236	3,403	28,579
기본골격	AMS	158	598	1,825	29,496	-	18,115	929	760	1,908	9,552
	블루박스	958	3,200	972	13,360	4,249	4,160	1,422	98	223	9,476
	de min	479	3,200	486	6,680	8,497	2,080	1,422	49	111	4,738
	합계	1,596	6,998	3,283	49,537	12,746	24,355	3,773	907	2,242	23,766

주: 1. 현행수준은 WTO에 통보된 실적임.

2. 양허수준은 현재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이고, 기본골격은 아래와 같이 가정한 상한 설정과 감축률을 적용한 이후 회원국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규모를 나타냄.

3. 기본골격 아래 AMS 양허수준은 그 규모에 따라 각각 40%(호주, 브라질, 캐나다, 우리나라, 노르웨이, 스위스), 50%(일본, 미국), 60%(EU)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함.

4. 블루박스는 현행수준과 양허수준의 경우 실제 사용규모이며, 기본골격 아래에서는 농업생산액의 5%로 상한이 설정된 경우임.

5. De minimis는 양허수준 아래 농업생산액의 5%(개도국의 경우 10%)로써 최대 활용 가능 규모가 되며, 기본골격 아래에서는 농업생산액 대비 2.5%(호주, 캐나다,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5%(브라질, 우리나라), 10%(인도) 등 각각 50% 감축(인도의 경우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6. 브라질의 농업생산액은 2000년 부가가치 수준을 사용했고, 스위스도 2000년 기준임.

자료: WTO<www.wto.org>; OECD(2003)

- EU의 경우 AMS 소진률은 65%에 불과하며, 더욱이 2003년 CAP 개혁을 통해 블루박스의 상당 부분이 그린박스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downpayment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임송수 2003).¹⁶⁾

16) 예를 들면, 프랑스는 곡물보조의 75%를 생산중립 직접지불로 전환하고 나머지 25%만 생산과 연계된 블루박

- 미국은 AMS 소진률이 최근에 증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축 부담을 갖게 될 것임.
-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AMS 소진률이 각각 94%와 92%로 높아, AMS나 양허수준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지만, 현행수준과 비교할 때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산출됨.

표 4. AMS의 소진률과 상대적 규모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	일본	우리 나라	노르 웨이	스위스	미국
기준연도	2000	1998	1999	2000	1997	2000	2000	2000	1998	2000
AMS 소진률 (%)	45	8	21	65	-	18	94	92	71	88
AMS/농업생산액 (%)	1	2	16	28	-	44	5	65	71	10
AMS/EU AMS (%)	0	1	4	100	-	49	2	2	4	26

자료: WTO(www.wto.org); OECD(2003)

- 이에 따라 핵심은 앞으로 협상에서 보조 감축률을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

다. AMS 및 품목별 AMS 감축(para. 9-10)

- 무역왜곡 보조와 마찬가지로 AMS에도 구간별 감축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AMS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해야 함.
-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AMS의 높낮이를 따져보면 노르웨이가 65%로 높고, 일본 44%, EU 28%, 캐나다 16%, 미국 10%, 우리나라 5% 등으로 나타남<표 3>.
 - 절대규모 측면에서 AMS가 가장 큰 EU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이 그 49%, 미국이 26%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를 기록함.

스 조치로 유지할 계획임.

- 이처럼 상대적인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의 AMS 규모는 낮게 나타나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G10 차원에서는 일부 불리한 회원국이 있어 G10은 캐나다와 함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AMS 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미국은 EU를 겨냥해 농업생산액 대비 AMS 크기를 기준으로 AMS를 감축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기본골격 협상에서 '절대 기준 또는 상대기준'에 의한 감축 문안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EU도 같은 의견이어서 결국 삭제됨.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개도국이 주장한 내용으로 특히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선진국이 보조를 늘림으로써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예: dumping)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예를 들면, 1996~2001년에 미국은 면화에 대한 AMS 지출을 340만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늘렸으며, 쌀에 대해서도 580만 달러에서 7억 6,290만 달러로 증대시킴(www.wto.org).
- 기본골격이 일부 품목 특정 AMS의 감축을 명시하는 것도 이러한 품목 사이의 AMS 전이(product shifting)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G10은 품목별 AMS 상한이 AMS의 취지(통합 방식)에 어긋나고 각국의 농정 신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품목별 AMS 상한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형평성 회복의 논리를 지님.
 - 대부분의 개도국은 양허한 AMS가 없거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de minimis 중심의 정책조치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품목별 농업생산액 기준(품목 특정 de minimis의 경우)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면 선진국이 주로 사용하는 AMS는 통합된 지표로 전체 상한 아래서 품목 사이의 보조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임.

- 품목별 AMS 상한이 설정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AMS 대상 품목과 그 보조 규모 이하 수준에서 AMS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제약을 지님.
- 1995~2000년에 AMS 대상 품목은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로 제한돼 있으며, 전체 AMS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7%임<표 5>.

표 5. 우리나라의 현행 AMS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율

연도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누에고치
1995	0.97	0.0248	0.0029	-	-
1996	0.97	0.0259	0.0028	-	-
1997	0.97	0.0238	0.0029	0.0005	0.00001
1998	0.97	0.0299	0.0040	-	-
1999	0.97	0.0314	-	-	0.00003
2000	0.97	0.02	-	0.0011	-

자료: WTO(www.wto.org)

- 문제는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AMS 정책이 필요하다더라도 5개 품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de minimis의 축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품목 특정한 보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특히 쌀 정책이 가격보조에서 그린박스에 속하는 공공비축제와 직접지불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럴 경우 쌀에 고착된 AMS(전체의 97%)가 상당부분 사장됨으로써 농정 전반에서 AMS 조치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임.
- 농정개혁 과정에서 AMS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EU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다양한 품목에 대해 AMS 조치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농정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신축적인 농정수단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¹⁷⁾

17)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EU, 일본 등이 활용하는 품목 특정 de minimis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라. De minimis 감축(para. 11~12)

- De minimis의 감축은 S&D 원칙을 고려하면서 협상하도록 규정함.
 - 개도국이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의 모든 de minimis 조치는 감축을 면제한다는 문구를 감안할 때 de minimis의 감축은 확실해보임.

-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 면제는 인도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생계농과 빈농에 대한 기준과 '거의 모든 조치(almost all de minimis support)'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용대상 회원국과 조치가 결정될 것임.
 - 최소한 후자와 관련, 인도는 AMS 없이 de minimis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허된 AMS가 없는 개도국이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내다보임.

- De minimis의 감축은 미국의 입장에서 경기순환 대응 직접지불(CCP)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기준과 연계시켜 협상할 것으로 전망됨.

마. 블루박스 상한과 새로운 기준(para. 13~15)

- 블루박스에 대한 규율은 기본골격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음.

- 미국의 CCP를 새로운 블루박스에 포함되도록 허용한 반면에 브라질 등 G20의 요구에 따라 추가 기준(additional criteria)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는데, 그 용어는 수정안의 'may be negotiated'에서 'will be negotiated'로 강화됨.
 - CCP는 과거 기준면적에 근거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지만, 현재의 시장가격에 따라 그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과 연계된 정책 조치라고 할 수 있음(박동규 등 2004).

○ CCP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PR_{CCP} = TP - PR_{FDP} - \max\{MP, LR\}$$

$$CCP = PR_{CCP} \times BA \times 85\% \times YLD$$

·PR_{CCP}: CCP 지급률(\$/부셀)

·TP: 목표가격(\$/부셀)

·PR_{FDP}: FDP 지급률(\$/부셀)

·MP: 시장가격(\$/부셀)

·CCP: 경기변동 대응 지불(\$)

·LR: 용자율(\$/부셀)

·BA: 과거 기준면적(acre)

·YLD: 프로그램 단수(부셀/acre)

○ 2000년 현재 블루박스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노르웨이, EU, 일본 등 3개국이며, UR 이행기간에 이 조치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임(UNCTAD 2003).

○ 기본골격은 블루박스 보조가 과거 평균 농업생산액의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 농업생산액에서 블루박스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노르웨이 44.4%, EC 8.2%, 일본 1% 정도임.

○ 기본골격은 농정개혁 수단으로서 블루박스의 역할을 인정함.

- 이에 따라 노르웨이처럼 그 활용 비율이 높은 회원국에 약간의 신축성(some flexibility)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잠재적인 사용 회원국에도 보조 상한이 적용된다고 밝힘.
- 무역왜곡 보조의 기준(base)을 산출함에서도 기존의 블루박스 규모와 설정된 상한 가운데 큰 것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블루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을 배려함.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블루박스의 상한이 2004년 AMS 양허수준과 비슷할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또한 블루박스 조치가 농정개혁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바. 그린박스 기준 명확화(para. 16)

- 기본골격은 그린박스의 취지에 맞도록 그 기준을 검토하고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세한 지침은 없음.

5. 수출경쟁에 관한 전이해

가. 수출보조 철폐(para. 17~21)

- 수출보조, 수출신용 및 보증, 수출보험, 식량원조, 수출 국영무역 (STE) 등 모든 수출보조 요소에 대해 합의된 일시까지 철폐하기로 함.
- 지난 칸쿤 각료회의는 수출보조의 철폐, 다른 수출경쟁 수단에 대한 규율 등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골격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함.
 - 수출보조는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특히 개도국과 NGO 에 의해 강력하게 비난받아온 것임.
- 주요국의 수출보조 실적을 살펴보면 <표 6>와 같음.
 - UR 협정아래 25개국이 수출보조 감소 의무를 지님.

표 6. 주요국의 수출보조 추이

단위: 100만 달러

국 가	1995	1996	1997	1998	1999
EU	6,292	6,684	4,915	5,835	5,588
스위스	447	369	295	292	-
미국	26	122	112	147	80
우리나라	2	3	3	3	12

자료: WTO(www.wto.org)

- 수출보조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EU이며, 이에 따라 EU는 수출보조의 철폐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의 수출신용과 식량원조에 의한 보조요소도 없애야 한다는 이른바 병행주의(parallelism)를 주장해 기본골격에 반영시킴.
- 미국이 주로 활용하는 수출신용에는 수출보조와 같은 규제가 없음.
 - 세계 무역에서 현금기준 또는 180일 이하의 수출신용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대부분을 차지함(WTO 2000).
 - 수출신용 규모는 WTO에 통보되지 않고 있으나, OECD에 따르면 1995~98년에 11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OECD 2000).
- STE에 의한 수출보조나 정부의 금융지원 및 손실보증도 철폐 대상임.
 - 캐나다의 밀 위원회(CWB)와 정부는 CWB가 기본골격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함(Canada Press 2004).
 - 호주도 밀, 쌀, 감자, 설탕 등을 대상으로 단일 판매 창구에 의한 유통 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율은 추후 협상과제로 제시된 것뿐이라고 반응을 나타냄(The Australian 2004).
- 수출보조 철폐의 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분명한 일시가 제시되지 못한 점, 특히 회원국의 내부 개혁 절차를 고려하도록 명시된 것(para. 20)에 우려를 나타내고 추후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Oxfam 2004).
 - EU의 수출보조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프랑스는 결국 기본골격의 병행주의 반영에 만족했으나, 프랑스의 Gaymard 농업부 장관은 수출보조 철폐 시한은 2015년 또는 2017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Agra Europe 2004b).

- 우리나라는 S&D 차원에서 수출보조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 농업협정 아래에서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보조 요소의 철폐와 직접 연관은 없음.

나. 개도국 우대조치(para. 22~25)

- 개도국의 경우 수출보조가 철폐된 시점 이후라도 얼마간(for a reasonable time) 농업협정 Article 9.4에 따라 처리, 등급 향상, 가공 등 수출용 농산물의 유통비용과 국제수송 및 운송비용의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개도국의 수출보조 철폐 시점은 앞으로 합의해야 할 선진국의 시점과 Article 9.4의 지속기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우리나라는 특히 판매 촉진비로서 물류비 부담이 큰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및 축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 사전에 지원 단가를 정해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과 업체(수출자 또는 물품 공급자)가 대상임.
 - 2001년에 판매 촉진비는 260억 원 정도임.

6. 세부원칙 협상 일정과 과제

가. 협상 일정

- 이번 일반 이사회는 2001년 Doha 각료회의가 위임한 협상 시한인 2005년 1월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 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함.
- 2005년 12월 Hong Kong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열릴 계획임.

- 세부원칙 협상은 2004년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는 2005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농업위원회의 다음 공식회의는 11월 18일로 예정돼 있음.

- 세부원칙 협상은 일단 제6차 각료회의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06년까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임.
 - 지금과 같은 협상 탄력이 앞으로도 지탱된다면 2005년까지 세부원칙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새로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원칙 협상이 기본골격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다수의 견해를 감안할 때 빠른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기본골격에서 구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많은 핵심 쟁점들을 추후 협상으로 미룬 점, 모호한 표현에 대한 상이한 해석 가능, 관세감축과 TRQ 증량에 관한 복잡한 공식 설정, UR 때 없었던 민감 품목, 특별 품목 등의 새로운 개념과 이에 대한 자세한 규율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부원칙 협상은 더 어렵고 긴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보임.

나. 협상 과제

- 구간별 보조 감축공식과 관련한 기준 및 계수 설정은 복잡하고 회원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보조 규모와 감축률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농업생산액과 같은 지표가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품목별 AMS 상한 설정은 우리나라의 미래 농정 신축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면서도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혹시 방법론 협상에서 상한 설정 면제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블루박스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브라질 등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그 추가 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지금처럼 휴경아래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며, 가격과 연동된 새로운 조치와 관련해서는 가격연동 부분이 크게 제약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조치의 미래 도입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de minimis를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고, AMS와 de minimis의 감축은 품목 특정한 보조에 커다란 제약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미래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임.
 - 비록 인도의 주장으로 첨가된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한 조치의 면제라 할지라도, 그 기준 협상에 적극 참여해 이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그린박스에 대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심각한 쟁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특히 NTC의 추가 반영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전체에서 그린박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69%(미국 70%, 일본 76%, EU 25%)에 이르고, 농정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이밖에도 기준연도의 설정과 관련해 특히 선진국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 선진국의 UR 의무는 2000년까지 정해져 있고, 그 이후부터 현행 유지의 형태로 진행돼 온 만큼 2004년까지 의무를 이행하는 개도국과 형평을 고려해 기준연도가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박경철. 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 임송수. 2003a. 『국내보조에 관한 WTO/DDA 농업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8.
- 임송수. 2003b. 『유럽연합의 2003년 CAP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2003-2(제2권).
- Agra Europe. 2004a. WTO Framework Deal Puts Doha Round Back on Track. August 6, 2004. <www.agra-net.com>
- Agra Europe. 2004b. EU Satisfied with WTO Farm Deal. August 6, 2004. <www.agra-net.com>
- Canadian Press. 2004. "Canada's Wheat Board under Fire As WTO Members Agree to Cut Farm Subsidies." July 31, 2004. <www.canada.com>
- ICTSD. 2004. WTO: July Framework Agreed at Eleventh Hour. *Bridges* 8(27), August 2004. <www.ictsd.org>
- Lim, Song-Soo. 2004. Agricultural Negotiations in the WTO: Issues and Prospects. 2004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7월 8~9일, 속리산 레이크 힐스 호텔.
- OECD. 2003.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Paris.
- OECD. 2000. *Agricultural Outlook 2000-2005*. Paris.
- Oxfam. 2004. "'Arrested Development' Trade Talks Move Inches But Miles Remain." Oxfam Press Release. <www.oxfam.org>
- The Australian. 2004. "End Not Nigh for Sing-Dest Sales: Vaile." August 3, 2004. <www.theaustralian.news.com.au>
- The Financial Express. 2004a. "Threat to Boycott Geneva Talks Worked: Kamal Nath." Aug. 4, 2004.
- The Financial Express. 2004b. "Stalled Agenda Is Now Work-In-Progress." Aug. 4, 2004.
- UNCTAD. 2003. An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under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Blue Box. UNCTAD/DITC/COM/2003/6
- Washington Trade Daily. 2004. "WTO Rules on EU Sugar Exports." Aug. 5, 2004.
- WTO. 2004. "Round-the-Clock Meetings Produce 'Historic' Breakthrough." WTO News Conference. <www.wto.org>
- WTO. 2000. Export Credits and Related Facilities. G/AG/NG/S/13. <www.wto.org>

시장접근분야의 기본골격의 이해와 평가, 시사점

목 차

1. 시장접근분야 기본골격의 이해
2. 시장접근분야 기본골격의 평가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서 진 교

쌀·DDA농업협상 특별대책 연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시장접근분야 기본골격의 이해

가. 시장접근분야 해석과 이해의 기본 시각

- 도하 각료합의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시장접근분야 협상목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이고, 이와 같은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기본골격이 만들어졌음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기본 골격은 UR 농업협정문을 대치할 법률적 형태의 최종 합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큼.
- 따라서 보다 상위의 개념인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기본 골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시장접근분야는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회원국간에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분야임. 따라서 문맥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상호 대립되는 입장간의 절충과정"을 고려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합의안은 지난 7월 16일 1차 초안이 배포된 이래 수정안(7월 28일)을 거쳐 다시 주요국간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므로 그 과정이 해석과 이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나. 시장접근분야 주요 내용

1) 관세감축: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을 채택(para 29)

□ 구간별 감축방식을 통해 농산물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져 오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향후 협상의 지침으로 설정하고 있음.

- 양허세율에서부터 관세감축을 이행
- 모든 국가에 예외없는 기여의 원칙
- 민감품목의 융통성을 고려한 조화의 원칙
- 모든 품목에 실질적인 시장접근

2) 관세상한: 그 역할을 추후 평가함(para. 30)

3)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 선정(para 31)

- 회원국이 관세라인을 기초로 민감품목을 지정
 - 해당 품목의 현행 시장개방 수준을 고려
- 지정된 민감품목의 수는 향후 협상에서 최종 결정됨.
 - 구간별 관세감축의 전반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시장개방(para 32~34)

- 모든 민감품목에 실질적 시장접근을 이행
 - 실질적 시장접근은 관세감축과 TRQ약속(TRQ commitments)의 조합을 통해서 달성
 - 단 해당 품목의 민감성을 반영할 때만이 균형된 협상에 도달

- TRQ확대는 구간별 관세감축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관세감축공식에서 벗어난 정도를 감안하여 협상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름.

4) 기타(para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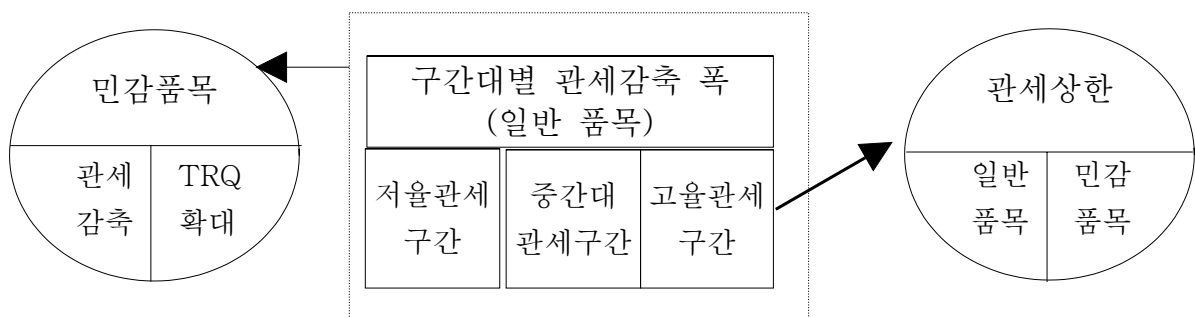
- 균형된 협상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융통성에는 TRQ내 관세의 감축 또는 철폐, TRQ관리방식의 개선을 포함
- 가공도별 관세격차는 추후 평가
- 관세의 단순화, SSM은 계속 논의

5) 개도국우대(para 39~42)

-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의 수와 시장개방 폭, TRQ확대, 이행기간에 있어서 우대
- 감축율과 TRQ확대 폭에 있어서 우대
-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 지역발전의 기준에 기초해서 선정 하되 기준은 추후 계속 논의
 - 보다 큰 융통성 부여
-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 개도국에게만 적용

다. 핵심 쟁점의 이해

- 구간별 관세감축 폭이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물론 관세상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품목의 관세감축 폭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민감품목의 특성상 관세감축 폭은 일반품목 보다는 적을 것임.
- 수입 금지적 관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세상한은 관세감축 폭이 클 경우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고율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에서 고율관세는 더욱 큰 폭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적 관세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 만큼 적어짐.
- 다만 고관세 민감품목의 경우 융통성을 이용해 관세를 적게 감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상한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그러나 관세를 적게 감축한 경우 TRQ를 확대해야 하며, TRQ는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일반품목의 관세감축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욱 많이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품목에 적용될 구간별 관세감축 폭이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임.



□ 관세상한의 역할 평가

-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은 수입국의 고율관세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이는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서 처음으로 관세상한(tariff cap)으로 구체화됨.
 - 지난 2003년 3월, 하빈슨초안에 기초한 세부원칙협상이 결렬된 이후 같은 해 7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미국과 EU는 공동제안을 발표.
 - 공동제안은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EU의 입장) 동시에 관세상한(미국과 호주 등 수출국 입장)을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이후 관세상한은 우리나라 및 일본 등 소위 수입국인 G-1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르베즈 초안에 이르기까지 관세감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다만 데르베즈 초안에서 소수의 NTC품목에 한해 관세상한 적용 예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
 - 당시 관세상한 적용예외는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으로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G-10의 입장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음.
- 이번에 합의된 기본 골격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불확실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관세상한이 핵심 관심인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향후 관세상한과 관련된 협상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형편임.
- 이는 오시마초안(7월 16일 배포)과 수정안(7월 30일 배포), 그리고 최종 합의안(8월 1일)에 이르기 과정에서 관세상한을 두고 나타난 주요국간의 의견 절충과정을 보다 보면 분명해짐.

- 오시마초안에서는 "관세상한의 역할은 더욱 평가를 요청한다 (The role of a tariff cap ... for sensitive products requires further evaluation.)"는 표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후 더 평가될 것이다(The role of a tariff cap ... for sensitive products will be further evaluated.)”로 바뀌었고, 최종 합의안에서는 수정안의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¹⁸⁾.
- 오시마초안이 발표된 이후 미국은 관세상한의 표현을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G-10은 표현자체를 삭제시키려고 했음.
- 결국 최종 합의안은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으나, “평가 요청”이라는 표현에서 보다 강한 의지가 담긴 “평가될 것”이란 표현으로 바뀌어 향후 협상에서 관세상한의 역할은 반드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미하나마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상한 문제는 그 역할을 포함하여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관세상한에 핵심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2~3개국에 불과하여 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종 협상결과가 민감품목의 민감성을 반영해야만 균형된 협상이 된다는 또 다른 표현을 고려해 보면¹⁹⁾ 일반 품목은 아니더라도 민감품목에 관세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

18) JOB(04)/96 16 July 2004와 JOB(04)/96/Rev.1 30 July 2004 및 WTO, WT/L/579, 2 August 2004를 참고할 것.,

19) 민감품목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para 32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고, 이는 일본의 쌀을 고려하기 위해 만든 일본을 위한 표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쌀의 시장개방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However, balance in this negotiation will be found only if the final negotiated result also reflects the sensitivity of the product concerned.

우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 특히 일본은 이 표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결국 현 단계에서 관세상한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관세상한이 없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특히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률이 정해져 고율관세가 대폭 감축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입 금지적 관세가 남아 있을 경우, 관세상한의 역할은 강조될 것임.
- 다만 민감품목의 경우 일본의 쌀을 생각할 때 획일적으로 관세상한이 설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설정된다고 해도 실질적 의미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형식

- 민감품목에도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관세감축과 TRQ약속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 이 때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에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구간별 관세감축방식이 적용될지 아니면 또 다른 관세감축방식이 적용될지는 불확실함.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 적용되든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은 일반품목 보다 작을 것임.
 - 예를 들어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 폭이 50%라면, 민감품목은 이 보다 작은 10%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관세 감축폭이 일반품목보다 작을 경우 대신 TRQ약속을 이행해야 하는데, TRQ약속에는 TRQ확대를 포함하여 TRQ내 적용되는 관세의 감축(또는 철폐), TRQ관리방식의 개선 등이 포함됨.

- 특히 TRQ확대는 구간별 관세감축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10%)과 일반 관세감축공식에 따랐을 경우 관세감축폭과(50%)의 차이(40%=50%-10%)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감품목의 관세를 적게 감축할수록 TRQ확대 폭은 커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실품목(product)과 관세라인(tariff line)의 차이

- 최종 합의문은 초안과 달리 민감품목 선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실품목 기준으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약속 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실제 시장개방 약속이행이 관세라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시장개방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음.
 - 관세감축 및 TRQ약속이 실품목 기준으로 되어 있는 반면, 하나의 실품목안에 여러 개의 관세라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쌀을 예로 들 경우, 실제 품목기준으로 쌀은 한 품목이지만 관세라인으로는 16개에 해당함. 품목기준으로 관세를 10% 감축할 경우, 16개 관세라인의 감축률을 모두 동일하게 10% 감축할 수도 있지만, 적절히 조정하여 평균적으로 10%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방식은 실제 이행 측면에서 과거의 UR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 오히려 민감품목에 최소감축률 적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특정 관세라인의 관세를 감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TRQ 확대도 지금처럼 품목기준으로 global 쿼터 설정이 가능해져 특정 관세라인의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 있음.

2. 시장접근분야 기본골격의 평가

가. 미국과 EU, G-20, G-10, G-33간의 미묘한 균형

- 그 동안 협상에서 나타난 시장접근분야 주요국의 핵심 관심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합의안은 주요국간의 관심 사항이 적절히 반영된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감축방식으로 고율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개념이 채택된 것은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민감품목이 도입되어 관세감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신 TRQ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EU의 당초 제안과 차이가 없으며, 우리나라 및 일본 등 G-10의 입장과도 큰 차이가 없음.
- 개도국의 우대가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개도국의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인정, 개도국을 위한 SSM의 도입 등은 G-33과 G-99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임.
- 다만 관세상한을 놓고 미국과 호주 등 보다 강력한 관세상한 설정을 원하는 입장과 관세상한 표현자체를 삭제하려고 했던 G-10의 입장이 충돌하여 현 수준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표현 자체가 삭제될 경우 미국이 수용 불가능하며, 표현이 보다 강화되었을 경우 G-10의 수용이 어려움.
 - 협상균형의 조건으로 민감성 반영부분도 수출국과의 균형을 이루는 점임.

- 또한 개도국 특별품목을 놓고 미국, EU 등 과도한 융통성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과 이를 찬성하는 G-33의 입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됨.
- 이전까지 허용되었던 특별품목의 TRQ증량 면제의 표현이 보다 큰 폭의 융통성 부여로 바뀌었으나, 대신 특별품목 선정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아울러 SSM을 확보한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감품목의 융통성 확보는 성과, 그러나 관세감축공식과 관세상한 부분은 부정적

-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은 관세감축의 기본 원칙으로 구간별 관세감축이 채택된 것은 부정적임. 특히 수입국의 반대로 결렬시킨바 있는 하빈슨 초안에서와 유사한 구간별 관세감축이 합의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개선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불리. 관세상한의 경우도 이와 유사
- 반면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융통성 확보는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성과임.

다. 추후 세부원칙협상에서 상당한 진통 예상

-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세부 원칙을 위한 기본 골격으로서 그리고 관세상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으로 이루어져 향후 협상에서 세부원칙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일반 농산물 관세의 대폭 감축 불가피

- 주요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매우 높고, 동시에 고관세 품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구조의 특징상 구간별 관세감축의 채택으로 민감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고관세 품목의 관세는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피해 우려
-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될 관세구간과 구간별 감축 폭 협상에서 관세수준이 제일 낮은 구간과 제일 높은 구간을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
- 한편 관세상한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고율관세 구간에 적용될 감축 폭을 크게 하는 것이 유리. 그러나 이 경우 민감품목 관세감축율도 따라서 커질 가능성이 있음.

나. 민감품목의 개수와 융통성 부여 정도가 실질 영향에 결정적 요인

-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높다고 해도 이를 모두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실제 영향은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폭과 TRQ확대 폭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됨.
-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감품목의 최소 하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한 다음 우선적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이후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TRQ확대 폭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민감품목의 수를 더욱 늘리는데 주력.

□ 관세수준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

- 관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핵심 농축산물은 설령 일반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관세 감축폭이 크지 않을 것임. 또한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낮은 세율의 TRQ를 확대(신설)해 주어야 하므로, 관세수준이 높지 않은 핵심 품목의 경우 민감품목으로의 지정이 항상 높은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관세수준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
- 한편 민감품목의 최대 개수는 적절한 수로 제한을 받을 것인 반면 실제 관세감축 및 TRQ 확대는 실품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관세라인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상의 관세라인을 추가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 다만 이 경우 민감품목의 개수가 늘어나는 단점도 있음.

다. 쌀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

□ 쌀을 관세화할 경우 시장개방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우리나라가 선진국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쌀은 선진국의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함. 만일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쌀은 개도국의 민감품목이나 혹은 특별품목중 어느 하나로 지정이 가능함.

□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쌀 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

- 선진국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감축 및 TRQ 확대는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일반 품목의 경우

관세구간의 개수, 감축 폭 등은 추후 협상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정도를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특히 관세상한 배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

- 개도국의 민감품목의 경우 그 수나 시장개방 정도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좋은 대우를 해 줄 것 이지만 그 정도는 미지수이고, 특별품목의 경우 더 큰 우대조치가 있을 것이나, 여전히 추후 협사에서 결정될 것임.

- 다만 민감품목이라고 해도 TRQ확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세화에 따른 이러한 TRQ의 자동적 확대가 쌀 관세화유예 연장의 준비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임.

Doha Work Programme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1.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Ministerial Declara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Doha and the full commitment of all Members to give effect to them. The Council emphasizes Members' resolve to complete the Doha Work Programme fully and to conclude successfully the negotiations launched at Doha. Taking into account the Ministerial Statement adopted at Cancún on 14 September 2003, and the statements by the Council Chairman and the Director-General at the Council meeting of 15-16 December 2003, the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 and agrees to take action as follows:

a. Agriculture: the General Council adopts the framework set out in Annex A to this document.

b. Cotton: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Sectoral Initiative on Cotton and takes note of the parameters set out in Annex A within which the trade-related aspects of this issue will be pursued in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General Council also attaches importance to the development aspects of the Cotton Initiative and wishes to stress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The Council takes note of the recent Workshop on Cotton in Cotonou on 23-24 March 2004 organized by the WTO Secretariat, and o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efforts to make progress on the development assistance aspects and instructs the Secretariat to continue to work with the development community and to provide the Council with periodic reports on relevant developments.

Members should work on related issues of development multilaterall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ntinue their bilateral programmes, and all developed countries are urged to participate. In this regard, the General Council instructs the Director General to consult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to direct effectively existing programmes and any additional resources towards development of the economies where cotton has vital importance.

c.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e General Council adopts the framework set out in Annex B to this document.

d. Development:

Principles: development concerns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The General Council rededicates and recommits Members to fulfilling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hich places the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t the heart of the Doha Work Programme. The Council reiterates the important role that enhanced market access, balanced rules, and well targeted, sustainably 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 can pla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at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S&D) treat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WTO Agreements. The Council recalls Ministers' decision in Doha to review all S&D treatment provision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and making them mor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The Council recognizes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so far. The Council instructs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in Special Session to expeditiously complete the review of all the outstanding Agreement-specific proposals and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with clear recommendations for a decision, by July 2005. The Council further instructs the Committee,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Doha mandate, to address all other outstanding work, including on the cross-cutting issues, the monitoring mechanism and the incorporation of S&D treatment into the architecture of WTO rules, as referred to in TN/CTD/7 and report, as appropriate, to the General Council.

The Council also instructs all WTO bodies to which proposals in Category II have been referred to expeditiously complete the consideration of these proposals and report to the General Council, with clear recommendations for a decision, as soon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July 2005. In doing so these bodies will ensure that, as far as possible, their meetings do not overlap so as to enabl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se discussions.

Technical Assistance: the General Council recognizes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since the Doha Ministerial Conference in expanding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RTA) to developing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in transition. In furthering this effort the Council affirms that such countries, and in particular least-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provided with enhanced TRTA and capacity building, to increase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negotiations, to facilitate their implementation of WTO rules, and to enable them to adjust and diversify their economies. In this context the Council welcomes and further encourages the improved coordination with other agencies, including under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TA for the LDCs (IF) and the 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JITAP).

Implementation: concerning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mandates Ministers gave in paragraph 12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Doha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and renews Members' determination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outstanding issues. The Council instructs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negotiating bodies and other WTO bodies concerned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as a priority. Without prejudice to the positions of Members, the Council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continue with his consultative process on all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under paragraph 12(b)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including on issues related to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3 of the TRIPS Agreement to products other than wines and spirits, if need be by appointing Chairpersons of concerned WTO bodies as his Friends and/or by holding dedicated consultations. The Director-General shall report to the TNC and the General Council no later than May 2005. The Council shall review progress and take any appropriate action no later than July 2005.

Other Development Issues: in the ongoing market access negotiations, recognis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WTO and relevant provisions of GATT 1994, special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e specific trade and development related needs and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apacity constraints. These particular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relating to food security, rural development, livelihood, preferences, commodities and net food imports, as well as prior unilateral liberalisa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ppropriate, in the course of the Agriculture and NAMA negotiations. The trade-related issues identified for the fuller integration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hould also be addressed, without creating a sub-category of Members, as part of a work programme, as mandated in paragraph 35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commitments made at Doha concerning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renews its determination to fulfil these commitments. Members will continue to take due account of the concern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 the

negotiations. The Council confirms that nothing in this Decision shall detract in any way from the special provisions agreed by Members in respect of these countries.

e. Services: the General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 to the TNC by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¹ and reaffirms Members' commitment to progress in this area of th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Doha mandate. The Council adopts the recommendations agreed by the Special Session, set out in Annex C to this document, on the basis of which further progress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will be pursued. Revised offers should be tabled by May 2005.

f. Other negotiating bodies:

Rules, Trade & Environment and TRIPS: the General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s to the TNC by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and by the Special Sessions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TRIPS Council.² The Council reaffirms Members' commitment to progress in all of these areas of th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Doha mandates.

Dispute Settlement: the General Council takes note of the report to the TNC by the Special Ses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³ and reaffirms Members' commitment to progress in this area of th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Doha mandate. The Council adopts the TNC's recommendation that work in the Special Session should continue on the basis set out by the Chairman of that body in his report to the TNC.

g. Trade Facilitation: taking note of the work done on trade facilitation by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under the mandate in paragraph 27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work carried out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Council both prior to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and after its conclusion, the General Council decides by explicit consensus to commence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modalities set out in Annex D to this document.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the Council agrees that these issues, mentioned in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in paragraphs 20-22, 23-25 and 26 respectively, will not form part of the Work Programme set out in that Declaration and therefore no work towards negotiations on any of these issues will take place within the WTO during the Doha Round.

h. Other elements of the Work Programme: the General Council reaffirms the high priority Ministers at Doha gave to those elements of the Work Programme which do not involve negotiations. Noting that a number of these issues are of particular interest to developing-country Members, the Council emphasizes its commitment to fulfil the mandates given by Ministers in all these areas. To this end, the General Council and other relevant bodies shall report in line with their Doha mandates to the Six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he moratoria covered by paragraph 11.1 of the Doha Ministerial Decision 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and paragraph 34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re extended up to the Sixth Ministerial Conference.

2. The General Council agrees that this Decision and its Annexes shall not be used in any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DSU and shall not be used for interpreting the existing WTO Agreements.

¹ This report is contained in document TN/S/16.

² The reports to the TNC referenced in this paragraph are contained in the following documents: Negotiating Group on Rules - TN/RL/9;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TN/TE/9;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IPS - TN/IP/10.

³ This report is contained in document TN/DS/10.

3. The General Council calls on all Members to redouble their efforts towards the conclusion of a balanced overall outcom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 fulfilment of the commitments Ministers took at Doha. The Council agrees to continue the negotiations launched at Doha beyond the timeframe set out in paragraph 45 of the Doha Declaration, leading to the Sixth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Recalling its decision of 21 October 2003 to accept the generous offer of the Government of Hong Kong, China to host the Sixth Session, the Council further agrees that this Session will be held in December 2005.

Annex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Agriculture

1. The starting point for the current phase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has been the mandate set out in Paragraph 13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This in turn built on the long-term objective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o establish a fair and market-oriented trading system through a programme of fundamental reform. The elements below offer the additional precision required at this stage of the negotiations and thus the basis for the negotiations of full modalities in the next phase. The level of ambition set by the Doha mandate will continue to be the basis for th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2. The final balance will be found only at the conclusion of these subsequent negotiations and within the Single Undertaking. To achieve this balance, the modalities to be developed will need to incorporate operationally effective and meaningful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griculture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they must be able to pursue agricultural policies that are supportive of their development goals,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food security and livelihood concerns. Non-trade concern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e Doha Declaration, will be taken into account.

3. The reforms in all three pillars form an interconnected whole and must be approached in a balanced and equitable manner.

4. The General Council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tton for a certain number of countries and its vital impor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DCs. It will be addressed ambitiously, expeditiously, and specifically, within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provisions of this framework provide a basis for this approach, as does the sectoral initiative on cotton.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ensure appropriate prioritization of the cotton issue independently from other sectoral initiatives. A subcommittee on cotton will meet periodically and report to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o review progress. Work shall encompass all trade-distorting policies affecting the sector in all three pillars of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competition, as specified in the Doha text and this Framework text.

5. Coherence between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of the cotton issue will be pursued as set out in paragraph 1.b of the text to which this Framework is annexed.

DOMESTIC SUPPORT

6.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se substantial reductions, the negotiations in this pillar will ensure the following: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remains an integral component of domestic support. Modalities to be developed will include longer implementation periods and lower reduction coefficients for all types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nd continued access to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6.2.
- There will be a strong element of harmonisation in the reductions made by developed Members. Specifically, higher levels of permitted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ill be subject to deeper cuts.

- Each such Member will make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overall level of its trade-distorting support from bound levels.
- As well as this overall commitment, Final Bound Total AMS and permitted *de minimis* levels will be subject to substantial reductions and, in the case of the Blue Box, will be capped as specified in paragraph 15 in order to ensure results that are coherent with the long-term reform objective. Any clarification or development of rules and conditions to govern trade distorting support will take this into account.

Overall Reduction: A Tiered Formula

7. The overall base level of 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s measured by the Final Bound Total AMS plus permitted *de minimis* level and the level agreed in paragraph 8 below for Blue Box payments, will be reduced according to a tiered formula. Under this formula, Members having higher levels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will make greater overall reductions in order to achieve a harmonizing result. As the first instalment of the overall cut, in the first year and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sum of all trade-distorting support will not exceed 80 per cent of the sum of Final Bound Total AMS plus permitted *de minimis* plus the Blue Box at the level determined in paragraph 15.

8. The following parameters will guide the further negotiation of this tiered formula:

- This commitment will apply as a minimum overall commitment. It will not be applied as a ceiling on reductions of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should the separate and complementary formulae to be developed for Total AMS, *de minimis* and Blue Box payments imply, when taken together, a deeper cut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for an individual Member.
- The base for measuring the Blue Box component will be the higher of existing Blue Box payments during a recent representative period to be agreed and the cap established in paragraph 15 below.

Final Bound Total AMS: A Tiered Formula

9. To achieve reductions with a harmonizing effect:

- Final Bound Total AMS will be reduced substantially, using a tiered approach.
- Members having higher Total AMS will make greater reductions.
- To prevent circumvention of the objective of the Agreement through transfers of unchanged domestic support between different support categories, product-specific AMSs will be capped at their respective average levels according to a methodology to be agreed.
- Substantial reductions in Final Bound Total AMS will result in reductions of some product-specific support.

10. Members may make greater than formula reduc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quired level of cut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De Minimis

11. Reductions in *de minimis* will be negotiated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Developing countries that allocate almost all *de minimis* support for subsistence and resource-poor farmers will be exempt.

12. Members may make greater than formula reduc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quired level of cut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Blue Box

13. Members recognize the role of the Blue Box in promoting agricultural reforms. In this light, Article 6.5 will be reviewed so that Members may have recourse to the following measures:

- Direct payments under production-limiting programmes if:
 -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nd unchanging areas and yields; or
 -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or less of a 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of production; or
 - livestock payments are made on a fixed and unchanging number of head.

Or

- Direct payments that do not require production if:
 -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nd unchanging bases and yields; or
 - livestock payments made on a fixed and unchanging number of head; and
 -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or less of a 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of production.

14. The above criteria, along with additional criteria will be negotiated. Any such criteria will ensure that Blue Box payments are less trade-distorting than AMS measures, it being understood that:

- Any new criteria would need to take account of the balance of WTO rights and obligations.
- Any new criteria to be agreed will not have the perverse effect of undoing ongoing reforms.

15. Blue Box support will not exceed 5% of a Member's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uring an historical period. The historical period will be established in the negotiations. This ceiling will apply to any actual or potential Blue Box user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cases where a Member has placed an exceptionally large percentage of its trade-distorting support in the Blue Box, some flexibility will be provided on a basis to be agreed to ensure that such a Member is not called upon to make a wholly disproportionate cut.

Green Box

16. Green Box criteria will be reviewed and clarified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Green Box measures have no, or at most minimal, trade-distorting effects or effects on production. Such a review and clarification will need to ensure that the basic concepts,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 Green Box remain and take due account of non-trade concerns. The improved obligations for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all new disciplines foreshadowed in paragraph 48 below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with respect to the Green Box.

EXPORT COMPETITION

17.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reduction of, with a view to phasing ou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s a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Members agree to establish detailed modalities ensuring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by a credible end date.

End Point

18. The following will be eliminated by the end date to be agreed:

- Export subsidies as scheduled.
-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beyond 180 days.
-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with repayment periods of 180 days and below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disciplines to be agreed. These disciplines will cover, *inter alia*, payment of interest, minimum interest rates, minimum premium requirements, and other elements which can constitute subsidies or otherwise distort trade.
- Trade distorting practices with respect to exporting STEs including eliminating export subsidies provided to or by them, government financing, and the underwriting of losses. The issue of the future use of monopoly powers will be subject to further negotiation.
- Provision of food aid that is not in conformity with operationally effective disciplines to be agreed. The objective of such disciplines will be to prevent commercial displacement.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regards the provision of food aid by Members, including related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issues, will b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s. The question of providing food aid exclusively in fully grant form will also be addressed in the negotiations.

19. Effective transparency provisions for paragraph 18 will be established. Such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standard WTO practice, will be consistent with commercial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Implementation

20. Commitments and disciplines in paragraph 18 will be implemented according to a schedule and modalities to be agreed. Commitments will be implemented by annual instalments. Their phasing wi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some coherence with internal reform steps of Members.

21. The negotiation of the elements in paragraph 18 and their implementation will ensure equivalent and parallel commitments by Member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22.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benefit from longer implementation periods for the phasing out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23. Developing countries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9.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for a reasonable period, to be negotiated, after the phasing out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implementation of all disciplines identified above are completed.

24. Members will ensure that the disciplines on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to be agreed will make appropriate provision for differential treatment in favour of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the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mproved obligations for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all new disciplines as foreshadowed in paragraph 48 will be critically important in this regard. Provisions to be agreed in this respect must not undermine the commitments undertaken by Members under the obligations in paragraph 18 above.

25. STE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ich enjoy special privileges to preserve domestic consumer price stability and to ensure food security will receive special consideration for maintaining monopoly status.

Special Circumstances

26.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ich cannot be adequately covered by food aid, commercial export credits or preferential international financing facilities, ad hoc temporary financing arrangements relating to exports to developing countries may be agreed by Members. Such agreements must not have the effect of undermining commitments undertaken by Members in paragraph 18 above, and will be based on criteria and consultation procedures to be established.

MARKET ACCESS

27.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calls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Members also agreed tha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Members would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in the negotiations.

The Single Approach: a Tiered Formula

28. To ensure that a single approach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meets all the objectives of the Doha mandate, tariff reductions will be made through a tiered formula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different tariff structures.

29. To ensure that such a formula will lead to substantial trade expansion, the following principles will guide its further negotiation:

- Tariff reductions will be made from bound rates. Substantial overall tariff reductions will be achieved as a final result from negotiations.
- Each Member (other than LDCs) will make a contribution. Operationally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provision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 Progressivity in tariff reductions will be achieved through deeper cuts in higher tariffs with flexibilities for sensitive products.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will be achieved for all products.

30. The number of bands, the thresholds for defining the bands and the type of tariff reduction in each band remain under negotiation. The role of a tariff cap in a tiered formula with distinct treatment for sensitive products will be further evaluated.

Sensitive Products

Selection

31. Without undermining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tiered approach, Members may designate an appropriate number, to be negotiated, of tariff lines to be treated as sensitive, taking account of existing commitments for these products.

Treatment

32.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improvement' will apply to each product.

33. 'Substantial improv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combinations of tariff quota commitments and tariff reductions applying to each product. However, balance in this negotiation will be found only if the final negotiated result also reflects the sensitivity of the product concerned.

34. Some MFN-based tariff quota expansion will be required for all such products. A base for such an expansion will be established, taking account of coherent and equitable criteria to be developed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not to undermine the objective of the tiered approach, for all such products, MFN based tariff quota expansion will be provided under specific rules to be negotiated taking into account deviations from the tariff formula.

Other Elements

35. Other elements that will give the flexibility required to reach a final balanced result includ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n-quota tariff rates, and operationally effective improvements in tariff quota administration for existing tariff quotas so as to enable Members, and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fully benefit from th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under tariff rate quotas.

36. Tariff escalation will be addressed through a formula to be agreed.

37. The issue of tariff simplification remains under negotiation.

38. The question of the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SSG) remains under negotiati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39. Having regard to their rural development, food security and/or livelihood security need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n integral part of all elements of the negotiation, including the tariff reduction formula, the number and treatment of sensitive products, expansion of tariff rate quotas, and implementation period.

40. Proportionality will be achieved by requiring lesser tariff reduction commitments or tariff quota expansion commitments from developing country Members.

41.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ll have the flexibility to designate an appropriate number of products as Special Products, based on criteria of food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needs. These products will be eligible for more flexible treatment. The criteria and treatment of these products will be further specified during the negotiation phase and will recognize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Special Products to developing countries.

42.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will be established for use by developing country Members.

43. Full implementation of the long-standing commitment to achieve the fullest liberalisation of trade in tropi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for product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from the growing of illicit narcotic crops is overdue and will be addressed effectively in the market access negotiations.

44. The importance of long-standing preferences is fully recognised. The issue of preference erosion will be addressed. For the further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paragraph 16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N/AG/W/1/Rev.1 will be used as a reference.

LEAST- DEVELOPED COUNTRIES

45. Least-Developed Countries, which will have full access to all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above, are not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Developed Members,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a position to do so, should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products originating from least-developed countries.

46. Work on cotton under all the pillars will reflect the vital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certain LDC Members and we will work to achieve ambitious results expeditiously.

RECENTLY ACCEDED MEMBERS

47. The particular concerns of recently acceded Members will be effectively addressed through specific flexibility provisions.

MONITORING AND SURVEILLANCE

48. Article 18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ill be amended with a view to enhancing monitoring so as to effectively ensure full transparency, including through timely and complete notifications with respect to the commitments in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competition. The particular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will be addressed.

OTHER ISSUES

49. Issues of interest but not agreed: sectoral initiatives, differential export taxes, GIs.

50. Disciplines on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 Article 12.1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ill be strengthened.

Annex B

Framework for Establishing Modalities in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1. This Framework contains the initial elements for future work on modalities by th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Additional negotiations are required to reach agreement on the specifics of some of these elements. These relate to the formula, the issue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unbound tariffs in indent two of paragraph 5, the flexibilities for developing-country participants, the issue of participation in the sectorial tariff component and the preferences. In order to finalize the modalities, the Negotiating Group is instructed to address these issues expeditiousl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mandate of paragraph 16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overall balance therein.
2. We reaffirm that negotiations on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shall aim to reduce or as appropriate eliminate tariffs, including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peaks,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as well as non-tariff barriers, in particular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We also reaffirm the importanc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as integral parts of the modalities.
3. We acknowledge the substantial work undertaken by th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and the progress towards achieving an agreement on negotiating modalities. We take note of the constructive dialogue on the Chair's Draft Elements of Modalities (TN/MA/W/35/Rev.1) and confirm our intention to use this document as a reference for the future work of the Negotiating Group. W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continue its work, as mandated by paragraph 16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ith its corresponding references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XXVIII *bis* of GATT 1994 and to the provisions cited in paragraph 50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basis set out below.
4. We recognize that a formula approach is key to reducing tariffs, and reducing or eliminating tariff peaks, high tariffs, and tariff escalation. We agree that the Negotiating Group should continue its work on a non-linear formula applied on a line-by-line basis which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and interest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including through less than full reciprocity in reduction commitments.
5. We further agree on the following elements regarding the formula:
 - product coverage shall be comprehensive without *a priori* exclusions;
 - tariff reductions or elimination shall commence from the bound rates after full implementation of current concessions; however, for unbound tariff lines, the basis for commencing the tariff reductions shall be [two] times the MFN applied rate in the base year;
 - the base year for MFN applied tariff rates shall be 2001 (applicable rates on 14 November);
 - credit shall be given for autonomous liberaliz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provided that the tariff lines were bound on an MFN basis in the WTO since the conclusion of the Uruguay Round;
 - all non-*ad valorem* duties shall be converted to *ad valorem* equivalents on the basis of a methodology to be determined and bound in *ad valorem* terms;
 - negotiations shall commence on the basis of the HS96 or HS2002 nomenclature, with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to be finalized in HS2002 nomenclature;

- the reference period for import data shall be 1999-2001.

6. We furthermore agree that, as an exception, participants with a binding coverage of non-agricultural tariff lines of less than [35] percent would be exempt from making tariff reductions through the formula. Instead, we expect them to bind [100] percent of non-agricultural tariff lines at an average level that does not exceed the overall average of bound tariffs for all developing countries after full implementation of current concessions.

7. We recognize that a sectorial tariff component, aiming at elimination or harmonization is another key element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paragraph 16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ith regard to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in particular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We recognize that participation by all participants will be important to that effect. We therefor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pursue its discussions on such a component, with a view to defining product coverage, participation, and adequate provisions of flexibility for developing-country participants.

8. We agree that developing-country participants shall have longer implementation periods for tariff reductions. In addition, they shall be given the following flexibility:

- a) applying less than formula cuts to up to [10] percent of the tariff lines provided that the cuts are no less than half the formula cuts and that these tariff lines do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a Member's imports; or
- b) keeping, as an exception, tariff lines unbound, or not applying formula cuts for up to [5] percent of tariff lines provided they do not exceed [5]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a Member's imports.

We furthermore agree that this flexibility could not be used to exclude entire HS Chapters.

9. We agree that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the formula nor participate in the sectorial approach, however, as part of their contribution to this round of negotiations, they are expected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ir level of binding commitments.

10. Furthermore,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support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production and export base, we call upon developed-country participants and other participants who so decide, to grant on an autonomous basis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originating from least-developed countries by the year [...].

11. We recognize that newly acceded Members shall have recourse to special provisions for tariff reduction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ir extensive market access commitments undertaken as part of their accession and that staged tariff reductions are still being implemented in many cases. W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further elaborate on such provisions.

12. We agree that pending agreement on core modalities for tariffs, the possibilities of supplementary modalities such as zero-for-zero sector elimination, sectorial harmonization, and request & offer, should be kept open.

13. In addition, we ask developed-country participants and other participants who so decide to consider the elimination of low duties.

14. We recognize that NTBs are an integral and equally important part of these negotiations and instruct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work on NTBs. In particular, we encourage all participants to make notifications on NTBs by 31 October 2004 and to proceed with identification, examination,

categorization, and ultimately negotiations on NTBs. We take note that the modalities for addressing NTBs in these negotiations could include request/offer, horizontal, or vertical approaches; and should fully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y participants.

15. We recognize that appropriate studies and capacity building measures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modalities to be agreed. We also recognize the work that has already been undertaken in these areas and ask participants to continue to identify such issues to improve participation in the negotiations.

16. We recognize the challenges that may be faced by non-reciprocal preference beneficiary Members and those Members that are at present highly dependent on tariff revenue as a result of these negotiations on non-agricultural products. We instruct the Negotiating Group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rse of its work, the particular needs that may arise for the Members concerned.

17. We furthermore encourage the Negotiating Group to work closely with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in Special Session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issue of non-agricultural environmental goods covered in paragraph 31 (iii)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nnex C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a) Members who have not yet submitted their initial offers must do so as soon as possible.
- (b) A date for the submission of a round of revised offers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feasible.
- (c) With a view to providing effective market access to all Members and in order to ensure a substantive outcome, Members shall strive to ensure a high quality of offers, particularly in sectors and modes of supply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be given to least-developed countries.
- (d) Members shall aim to achieve progressively higher levels of liberalization with no a priori exclusion of any service sector or mode of supply and shall give special attention to sectors and modes of supply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Members note the interest of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other Members, in Mode 4.
- (e) Members must intensify their efforts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on rule-making under GATS Articles VI:4, X, XIII and XV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deadlines.
- (f) Targeted technical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with a view to enabling developing countrie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negotiations.
- (g) For the purpose of the Sixth Ministerial meeting, the Special Session of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review progress in these negotiations and provide a full report to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including possible recommendations.

Annex D

Modalities for Negotiations on Trade Facilitation

1. Negotiations shall aim to clarify and improve relevant aspects of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1994 with a view to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⁴ Negotiations shall also aim at enhancing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 this area. The negotiations shall further aim at provisions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customs or any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on trade facilitation and customs compliance issues.

2.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Members recognize that this principle should extend beyond the granting of traditional transition periods for implementing commitments. In particular, the extent and the timing of entering into commitments shall b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Members. It is further agreed that those Members would not be obliged to undertak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projects beyond their means.

3.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will only be required to undertake commitment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individual development, financial and trade needs or their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4. As an integral part of the negotiations, Members shall seek to identify their trade facilitation needs and priorities, particularly those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nd shall also address the concern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related to cost implications of proposed measures.

5.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s vital for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to enable them to fully participate in and benefit from the negotiations. Members, in particular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commit themselves to adequately ensure such support and assistance during the negotiations.⁵

6. Support and assistance should also be provided to help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implement the commitments resulting from the negoti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ure and scope. In this context, it is recognized that negotiations could lead to certain commitments whose implementation would require support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e part of some Members. In these limited cases, developed-country Members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support and assistance directly related to the nature and scope of the commitments in order to allow implementation.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in cases where required support and assistance for such infrastructure is not forthcoming, and where a developing or least-developed Member continues to lack the necessary capacity, implementation will not be required. While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ensure the necessary support and assistance,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mitments by developed countries to provide such support are not open-ended.

7. Members agree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and assistance provided and its abilit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⁴ It is understood that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le format of the final result of the negotiations and would allow consideration of various forms of outcomes.

⁵ In connection with this paragraph, Members note that paragraph 38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ddresses relevant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concerns of Members.

8. In order to make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more effective and operational and to ensure better coherence, Members shall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OECD, UNCTAD, WCO and the World Bank to undertake a collaborative effort in this regard.

9.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relevant work of the WCO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area.

10. Paragraphs 45-51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shall apply to these negotiations. At its first meeting after the July session of the General Council,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shall establish a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 and appoint its Chair. The first meeting of the Negotiating Group shall agree on a work plan and schedule of meetings.
